

### III. 재산세를 자동차세와 같이 일할계산제도 도입의견에 대한 고찰

#### 1. 일할계산제도에 대한 견해

현재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서 일할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.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제도는 1999년 말 지방세법 개정시 도입(신규등록·말소등록시에는 이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였음)된 제도로서 당시 자동차의 승계취득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자동차세의 승계 또는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양도자·양수자의 자동차 사용일수 별로 일할계산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. 이 경우에도 일할계산기준일을 실제 양도일로 할 것이지, 자동차 이전등록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부분되어 이의 해소방안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에 양수인이 양도인과 합의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하였다.

그러나 매년 일할계산 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세정업무증가 등 일할계산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다수의 견의에 따라 2003년 말 지방세법 개정시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적용하되, 양도·양수인이 사실상 양도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이와 같이 자동차세에 일할계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는 물건과세를 원칙으로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므로 세무전산의 뒷받침 하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이행될 수 있으나,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전국 세대별합산 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일할계산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.

#### 2. 일할계산제도 도입의견에 대한 문제의 제기

##### 가. 조세 성격상 일할계산제도 도입논리 미약

지방자치단체가 도로, 교통, 주택, 수도, 보건, 환경사업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행정서비스의 향유에 대한 상응한 세금을 과세하는 응익과세 성격의 세금이며, 자동차세는 도로이용, 환경오염 등 자동차 이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